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03 발의연월일: 2025. 3. 27

발 의 자 : 엄태영 · 김소희 · 이종배

신동욱 • 박덕흠 • 이만희

김승수 · 윤한홍 · 박충권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어 조사여부를 국회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음.

다만, 정치적 갈등에 따라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사례도 있어 탄핵제도의 남용 소지가 있으며 이는 의회주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소추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 추절차의 공정성을 충실히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및 제131조).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1항 중 "회부하여"를 "회부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전단 중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을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로 한다.

제1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제130조제1항에 따라 회부받은 탄핵소추안을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조사 결과가 제출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조사 과정에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 등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핵소추의 발의 및 조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 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 ②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 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 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 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 특별위원회는 제130조제1항에 따라 회부받은 탄핵소추안을 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사 ·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조사 결과가 제출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경우 조사 과정에서 탄핵소추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증거 등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